

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과징금 산정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을 산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.
- 나. 과징금의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인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.
- 다. 나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공인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 순으로 연간 매출액을 산출·조정한다.
- 라. 다목에 따라 총매출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산정 범위는 공인기관 인정 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인정 분야로 한정한다.

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$$\text{과징금 부과금액} = \frac{\text{연간 매출액}}{180} \times 0.07 \times \text{사용중지 기간(일)}$$

비고: 위 표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,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.